

## 역사속에 사라진 호주 중심의 '가(家)'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1958년 제정된 민법 중 호주제 폐지가 47년 만에 이루어져, 부계 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유지해온 가족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Q&A로 알아보는

### 새로운 호주제도

#### 家族족 -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의 변화

**Q** 민법개정에 따른 가족의 범의는 어디까지인가?

**A**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 평등하게 가족의 범위가 정해진다.

**Q**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다면?

**A**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 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하기 전에 사용한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Q**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친자로 공시된다.

**A** 혼인기간 1년 이상 된 재혼부부가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만 아



나라 발급되는 신분등록부에도 친자로 공시된다.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만 원부를 발급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된다. 친양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녀 나이는 15세 미만자이고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친양자로 되면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Q 친 양자제도란?**

**A** 입양시설 등에서 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신분등록부에 친생자로 공시된다.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3년 이상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며 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여성 - 평등한 성, 평등한姓**

**Q 누구의 성을 따라야하나?**

**A** 이번 민법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부성(父姓) 강제가 완화되었다.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나, 법적 강제성을 철폐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Q 형제간에 다른 성을 쓸 수 있나?**

**A** 혼인신고 시 부부간 협의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성이 결정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처음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다.

**Q 재혼가정 자녀의 성은?**

**A**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친 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자녀에게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Q 성 변경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A**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다.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身身分分 등록부 -**

**Q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무엇이 다른가?**

**A**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의해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 등, 초본을 대체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애지고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된다. 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게 된다.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Q 필요에 따라 호적등본과 같이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하는가?**

**A** 상속관계 확인, 보험·연금·보상 등 수급자 확인, 기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호적등본 대신에 새로운 신분 공시제에 의한 목적별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목적별로 가족사항, 혼인사항 등 필요한 공부(公簿)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Q 족보는 사라지게 되는가?**

**A**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호적을 대체하더라도 원하는 문중은 족보를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